"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6892
등록일자	2015.4.30.
결재일자	2015.5.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이상은	조현석	김용운	문경수	05/01 주윤중	
협조자					

2014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 예산성과금 심사 신청내용

(단위 : 천원)

신청부서	신청사업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액	성과요구액	비고
11개 부서	17개 사업	19,835,821	532,201	

❑ 예산성과금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결과** : 6개부서 6개사업 격려금 13,000천원 지급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결과				기지급된 인센티브(공제)	실지급 격려금	비고
	예산성과금	격려금	제외	비대상			
지급대상	-	6	10	1	2	6	
지급규모	-	13,000			1,500	11,500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제3조제4항에 의거 동일한 사유로 기 지급된 인센티브(포상금)만큼 공제 후 지급

20. . .

강 남 구

(기 획 예 산 과)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200호)
추진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법규사항
예산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관련 규정에 의해 산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공무원 등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절차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전문가의 검토 및 심의 받음.

- 2014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2014년도에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I 예산성과금 심사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200호)

❑ 대상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가 실제 발생한 회계연도

❑ 지급대상 및 요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지급대상	예산절약(지출절약)	수입증대
지급요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경우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수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 신청내역 : 감사담당관 "최초 전산시스템 감사를 통한 원인자부담금 37억 추징" 등

(단위 : 천원)

신청부서	신청사업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액	성과요구액	비고
11개 부서	17개 사업	19,835,821	532,201	

II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4. 28(화) 16:00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참석현황** : 총 9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7명)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 이선희 위원, 이재호 위원
- **심사내용** : 감사담당관 "최초 전산시스템 감사를 통한 원인자부담금 37억 추징" 등 17개 사업의 예산성과금(격려금) 지급여부 및 지급규모 결정

III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결과** : **6개부서 6개사업 격려금 13,000천원 지급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결과				기지급된 인센티브(공제)	실지급 격려금	비고
	예산성과금	격려금	제외	비대상			
지급대상	-	6	10	1	2	6	
지급규모	-	13,000			1,500	11,500	

격려금 지급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

- ○ 대상 :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 가능
- ○ 규모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제3조제4항에 의거 동일한 사유로 기 지급된 인센티브(포상금)만큼 공제 후 지급

Ⅳ 심사결과 사업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심 사 결 과			인센티브 (포상금)	실지급액
		심사내용	지급여부	지급규모		
				13,000		11,500
1	최초 전산시스템 감사를 통한 원인자부담금 37억추징 (감사담당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실태 감사실시 중 미부과 원인자부담금과 누락된 사후정산분 원인자부담금을 발견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담당부서의 업무 소홀로 누락된 원인자부담금을 감사 실시 중 발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2항 중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대상은 아님.	제외	-	800	-
2	채용박람회 개최 (강소기업채용박람회,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일자리정책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직원이 직접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는 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위탁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것은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방식이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1항 중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무역협회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타와 공동추진을 제안하여 코엑스 행사장 임대로 50% 절감과 도시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노력으로 무상사용을 획득하는 등 박람회 행사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이 인정되므로 격려금 지급.	격려금	2,000	500	1,500
3	2014 강남 한류페스티벌 (관광진흥과)	비예산 사업으로 한류페스티벌 행사을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적 부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한 상기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예산절약된 경우라 함은 .....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업체에서 전액 협찬을 받아 추진한 경우는 민간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총 행사비 전액을 수차례 협의로 협찬받아 추진하고 인지도 높은 한류 대표가수의 무료 출연 섭외로 강남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간의 노력이 인정되므로 격려금 지급	격려금	3,000	1,000	2,000

연번	사업명	심 사 결 과			인센티브 (포상금)	실지급액
		심사내용	지급여부	지급규모		
4	장기간 탈세한 숨은 세원발굴 (세무 1과)	면허세 과세대장·지적대장을 재산세 과세대장과 대조하여 누락된 재산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구 세입을 증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등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바, 누락되어 온 재산세를 발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2항 중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대상은 아님.	제외	-	-	-
5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문화체육과)	국기원의 태권도 상설공연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국·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하였다는 내용으로, 국·시비는 의존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 제5호에서 "수입이란 지방채 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의 자체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2014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 되지 않았음)	비대상	-	-	-
6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청소행정과)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더불어 민간업체로부터 운영수익금의 납부 협약 및 이행토록 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위탁하거나 직접 추진 하는 것은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방식이고, 운영수익금 부과는 민간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나,민간위탁 협약서에 운영수익금 납부 및 확보방안을 명기토록 설득하여 이행하였으며, 민간업체의 운영수익금 납부 연기 및 개선요청에 대하여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인정되므로 격려금 지급. (3년간의 운영수익금 전체 21억원에 대한 격려)	격려금	4,000	-	4,000
7	민간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한 CCTV무상설치 (재난안전과)	민간기업이 CCTV를 무상으로 구축해줌으로써 구축비용만큼 예산을 절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한 상기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예산절약된 경우라 함은 .....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한 경우는 민간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8	마을버스 승차대 활용 구정 홍보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승차대 유휴광고면을 무상으로 활용하여 주요 구정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비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한 상기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예산절약된 경우라 함은 .....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유휴 광고면을 사용한 경우는 민간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연번	사업명	심 사 결 과			인센티브 (포상금)	실지급액
		심사내용	지급여부	지급규모		
9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대로 구수입 제고 (교통정책과)	서울시 2014년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 및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실적이 자치구 종합순위 5위로 교통유발부담금 약152억원에 대해 30%(5위 교부율)인 약 47억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작년(약 46억원) 대비 1억6천만원을 수입증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서울시인센티브사업추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아 수입증대된 것이므로 이는 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2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10	공영주차장 예산절감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에서 2명이 주차비를 수기로 정산하던 것을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인해 1명만 근무하게 됨으로써 설치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무인정산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차년도부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1항 중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무인정산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첨단 무인정산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 업체와 수차례의 협의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범운영 하는 등 그 간의 노력이 인정되므로 격려금 지급.	격려금	1,500	-	1,500
11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인프라 예산절감 (교통정책과)	자전거 인프라 정비사업을 직원이 직접 추진하여 인건비를 절약하였으며, 중고자전거를 수리하여 저소득층에게 행복자전거로 기증함으로써 구매비를 절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인프라 정비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기편성되어 90%이상 집행되었으므로 인건비 절약에 해당하지 않고, 행복자전거 기증사업은 예산에 기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제1항 중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업무성과를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성과금 대상이 아님.	제외	-	-	-
12	신축건물 주변 노후·파손된 도로를 건축주가 직접 복구하는"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 절감 (도로관리과)	신축건물 건축시 주변 파손 도로를 건축주인 원인자 부담 전폭복구 시행으로 도로정비 예산을 절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건축주에게 신축건물 주변 파손 도로를 전폭복구토록 하는 것은 민간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연번	사업명	심 사 결 과			인센티브 (포상금)	실지급액
		심사내용	지급여부	지급규모		
13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자치행정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직원이 직접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내용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위탁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것은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방식이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1항 중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직원이 직접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문강사를 섭외하는 등 그 간의 노력이 인정되므로 격려금 지급	격려금	500	-	500
14	CCTV설치사업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재무과)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되어 있던 규정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임의규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수수료가 낮은 자체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달의뢰 계약보다 수수료가 더 낮은 자체 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1항 중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15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실현 (재무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2010.5.11.) 개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원가심사 전담인력을 운영토록 되어 원가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왔고 점차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5.3.5.)에 따라 계약원가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업무절차이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1항 중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16	효율적 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 증대 (재무과)	자금 집행방법 개선 및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등 수입증대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민간위탁금의 월별지급 등 자금 집행방법은 타 자치구에서 이미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적정한 공금 관리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이며, 은행예치에 따르는 이자수입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수입으로 새로운 수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2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님.	제외	-	-	-
17	구금고 출연금 확보등을 통한 수입 증대 (재무과)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입찰방법개선 및 금리인상 극대화에 기여토록 구 금고를 지정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 증대로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구 금고 지정에 따른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증대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2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연금 등은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이므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특별한 노력) 2항1호 중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효율적인 입찰방식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고의 출연금 확보 및 이자수입의 고정금리 상향 조정 등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이 인정되므로 격려금 지급.	격려금	2000	-	2000

V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에 따른 예산성과금(격려금) 지급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를 유도하며 그 노력에 대한 격려 분위기 조성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예산성과금(격려금)은 기여도에 따라 개별 계좌로 입금(5월초)

붙임 : 2015년도 예산성과금 대상자 및 기여도 내역 1부.